New York State
Department of
Taxation and Finance

Publication 3004-KOR
(8/12)

양식 **POA-1, *Power of Attorney*(**위임장**)**에 관한 정보

개인이 납세자를 대변하여 뉴욕주 세무국(New York State Tax Department)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때 해당 개인이나 납세자는 정확히 작성된 Power of Attorney(POA: 위임장)을 세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.

대변인으로 지칭된 개인은 납세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위임장에 명시된 세금관련 문제에 관련된 조치를 취합니다. 명시된 세금 문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

- 납세자의 세금에 관련된 기밀정보 수령
- 감사시 세금 부과액 산정기간 연장에 동의
- 세무조정에 동의
- 특별히 승인된 경우 세금보고서에 서명

그러나 개인 대변인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위임장이 요구되지 **않습니다.**

- 납세자를 위해 세금신고나 문서 준비
- 세무국에 납세자에 대한 정보 제공
- 납세자 또는 납세자를 대변하는 승인된 개인과 동행할 경우

납세자는 회사나 업체가 자신을 대변하도록 지정할 수 없으나 회사나 업체 내의 특정 개인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.

귀하는 세무국 양식 POA-1을 작성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양식 POA-1은 위임장에 명시된 특정 세금문제에만 국한됩니다. 그러므로 위임장에 Tax Matters(세금 사안)을 명시하지 않으면, 유산상속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관련 문제와 모든 기간에 적용됩니다. 유산상속세의 경우는 양식 ET-14, *Estate Tax Power of Attorney*(유산상속세 위임장)를 사용하십시오.

납세자 또는 납세자를 대신하는 승인된 개인이 양식 POA-1에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합니다. 납세자의 서명은 공증인의 인증을 거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납세자가 자신을 대변하도록 개인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세금신고 및 납세의 의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

납세자가 한 개인이 기밀세금정보를 수령하고 조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나 그 개인이 납세자를 직접 대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납세자는 양식 DTF-280, *Tax Information Authorization(세금정보 승인)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* 납세자는 E-ZRep 양식 TR-2000, *Tax Information Access and Transaction Authorization*(세금정보 열람 및 거래 승인)(출판물 3007)을 참조하여 세무전문인이 기밀세금정보를 열람 및 요청하고, 조세국과 해당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무 온라인 서비스 계좌를 통해 납세자를 대신해 특정 거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.